

광주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가단5171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욱

피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 변호사 이민아

변론 종결2020. 9. 11.

판결 선고2020.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B 대 317m²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4. 10. 11. 접수 제169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광주 북구 B 대 31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변동

○ C, D,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0. 11.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40. 12. 6. 접수 제146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4. 10. 11. 접수 제169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선대인 망 F의 일본식 성명 등

○ 원고의 부 망 F은 G 태어나 1998. 1. 11. 사망하였는바, 일제강점기에 망 F의 부 망 H는 1940(소화 15년). 3. 20. I으로 그 성명을 바꾸었고, 망 F도 이를 따라 같은 날 성명을 'E'로 바꾸었다가 해방 후 다시 'F'로 회복하였다. 한편 원고의 본관(本貫)은 'J'이다.

○ 망 H의 본적은 '전라남도 광산군 K'이고, 한편 'L'는 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M'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

○ 광주 북구 N 전 1158m²에 관하여 1930. 4. 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30. 4. 27. 접수 제12946호로 O, P,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3인의 주소로 '광주 북구 R'이 각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에는 공유자 중 1인인 C의 주소로 'K'이, E의 주소로 '광주시 동구 S'가 각 기재되어 있다.

○ 광주 북구 T 전 417m²에 관한 구 등기부에는 E과 C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바, 위 2인의 주소로 '광주부 U'가 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V'은 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W'으로 변경되었다.

○ 한편 광주 북구 X 임야 23803m²에 관하여는 1931. 10. 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42. 6. 18. 제7064호로 E, C, Y, Z, AA, AB 6명 명의로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E과 C의 주소로 '광주시 북구 R'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① 원고는 그중 E 지분에 관하여 1998. 1. 11.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2007. 11. 27. 접수 제2086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AC은 AB 지분에 관하여 1987. 7.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1992. 2. 25. 접수 제7215호로, AD은 Z 지분에 관하여 1968. 6. 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1992. 3. 27. 접수

제11733호로, AE과 AF는 AA 지분에 관하여 1978. 6.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1992. 10. 13. 접수 제41179호로, AG과 AH를 대위한 AI은 C 지분에 관하여 1975. 7. 22.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1995. 11. 17. 접수 제50541호로, AJ은 Y 지분에 관하여 1943. 8. 13. 유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2006. 6. 27. 접수 제13460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는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1948년) 9월 1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위 최초협정 제5조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일본인 소유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소유의 재산이 아닌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그 등기원인에 비추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가 1948. 9. 11. 당시 일본인 소유 재산임을 전제로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C, D, E'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식으로 성명을 바꿨고, 본관을 J으로 하는 'AK'씨 성을 가진 한국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에 비추어 위 'C, D, E' 사이에 가까운 혈연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망 F이 일본식으로 성명을 바꾸기 전에 이전등기를 마쳤던 광주 북구 N 전 1158m²에 관한 등기부에는 한국식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 D, E'은 모두 한국인이고, 특히 그 중 C은 망 P, E은 원고의 부인 망 F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결국, 이 사건 토지는 1948. 9. 11. 당시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망 F 외 2인의 소유로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피고는 1994. 10. 1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 등 참조). 또한 1948.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를 일본식 성명이라고 하더라도 해방 후의 일본식 성명 강요와 그 복구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그 명의자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식으로 성명을 바꾼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47698 판결,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H의 제적등본에는 망 F이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기 전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망 F이 일본식으로 성명을 바꾸기 전에 이전등기를 마쳤던 광주 북구 N 전 1158㎡에 관한 등기부에는 한국식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C의 주소와 같은 점, ③ 광주 북구 X 임야 23803㎡나 광주 북구 T 전 417㎡에 관하여는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명의자의 주소지를 본적지로 하는 제적등본을 확인해 보는 등의 방법으로 C 등이 망 F 등과 같은 사람이거나 적어도 일본식으로 성명을

바꾼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사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일본인 소유로 판단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고 믿은 데 관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하는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 1.경 AL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AL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대부계약 기간이 2023. 12. 31.까지로 연장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사실상 지배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하는 점유취득시효 항변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재